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-64호

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

2023. 9. 26.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

1. 개정 이유

빙과 및 얼음류의 불필요한 표시사항을 개선하고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도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품 및 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
아울러,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동 유통 가능한 식품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표시사항을 개선하고, 치즈 등 일부 식품유형과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시사항을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 내용

가.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(안 I. 3. 머, II. 1.

버.~어., II. 2. 다. 1))

- 1) 레토르트식품 용어 정의 정비
- 2) 빙과 및 얼음류는 가열이 불필요하므로 냉동식품의 가열여부에 따른 표시를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
- 3)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으로 해동하여 유통하는 냉동식품이 확대됨에 따라 냉동 식육을 제외한 모든

식품유형에 적용 가능 하도록 해동 유통 시 필요한 표시사항 개선

나.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(안 III. 1. 가, 다, 사, 자, 카, 더, 머, 벼, 저, 커)

- 1)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 표시 의무자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추가
- 2)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치즈의 식품유형 정비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기타 표시사항 정비
- 3)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동하여 유통하는 냉동식품에 대한 표시사항 정비

다.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(안 「별지 1」 1. 나.)

- 1) 영업소(장) 등의 명칭(상호) 및 소재지에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

3.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5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

- (1) 행정예고(공고 제2023-248호, '23.5.18.)
- (2)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(비대상, '23.5.3.)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-64호

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제3항에 따른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2023년 9월 26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(안)

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I. 3. 중 “단층플라스틱필름”을 “제조·가공 또는 위생처리된 식품을 12개월을 초과하여 실온에서 보존 및 유통할 목적으로 단층 플라스틱필름”으로 한다.

II. 1. 중 벼.를 서.로 하고, 벼.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벼. 식품제조·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가공식품(축산물가공품 제외)을, 식육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식육가공품을, 유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유가공품을, 알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알가공품을 해동하여 보관 및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스티커, 라벨(Label) 또는 꼬리표(Tag)를 사용할

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.

- 1) 제조연월일, 해동연월일, 냉동식품으로서의 소비기한(또는 품질유지기한)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소비기한(또는 품질유지기한)
- 2) 해동한 제조업체의 명칭과 소재지(냉동제품의 제조업체와 동일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)
- 3) 해동 후 보관방법 및 주의사항
- 4) “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”라는 문구 표시
- 5) 축산물가공품의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“해동된 냉장(실온)제품”이라는 표시를 “냉동”이라고 표시된 근처에 추가 표시

II. 2. 다. 1) 중 “(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에 따른 유형에 한함)”을 (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에 따른 유형에 한함. 단, 빙과류 중 빙과 및 얼음류는 제외함)”으로 한다.

III. 1. 가. 2) 거) (4)와 (5)를 삭제하고, (6)을 (4)로 한다.

III. 1. 다. 2) 거) (2)와 (3)을 삭제한다.

III. 1. 사. 2) 거) (15) 중 “자연치즈”를 “치즈”로 한다.

III. 1. 자. 2) 거) (3) (나)와 (다)를 삭제한다.

III. 1. 카. 2) 거) (4) 중 “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”을 “의사,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”로 하고, 같은 거)에 (9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9)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중 원재료가 냉동제품인 것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제조·가공한 제품의 경우에는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사용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.

(예시) 원재료 ○○○은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사용하였습니다.

원재료 ○○○: 해동제품

III. 1. 더. 2) 거)에 (13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13) 식육간편조리세트 중 원재료(식육 제외)가 냉동제품인 것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제조·가공한 제품의 경우에는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사용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.

(예시) 원재료 ○○○은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사용하였습니다.

원재료 ○○○: 해동제품

III. 1. 머. 1) 자) 중 “자연치즈”를 “치즈”로 하고, 같은 목 2) 거) (10) 중 “자연치즈”를 삭제하고, 같은 거)에 (15)와 (16)을 삭제한다.

III. 1. 버. 2) 거) (5)와 (6)을 삭제하고, (7)부터 (9)까지를 각각 (5)부터 (7)로 한다.

III. 1. 저. 2) 거)에 (3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3) 즉석조리식품 및 간편조리세트

원재료가 냉동제품인 것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제조·가공한 제품의 경우에는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사용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.

(예시) 원재료 ○○○은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사용하였습니다.

원재료○○○: 해동제품

III. 1. 커. 1) 가) 중 “식용란수집판매업”을 “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”으로 한다.

『별지1』 1. 나. 1) 자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자) 식용란선별포장업 : 영업 신고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소(장)의 명칭(상호)과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.

[표 3]의 식품유형 중 “자연치즈”를 “치즈”로 한다.

부칙<제2023-64호, 2023.9.26.>

제1조(시행일)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

1. III. 1. 사. 2) 거) (15) 및 머. 1) 자)와 같은 목 2) 거) (10)의 개정규

정 : 2024년 1월 1일

2. III. 1. 카. 2) 거) (4)의 개정규정 : 2026년 1월 1일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·가공 또는 수입(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는 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 및 용기·포장(이하 “식품등”이라 한다)에 적용한다. 다만,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·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·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I. 총칙	I. 총칙
3. 용어의 정의	3. -----
가. ~ 러. (생 략)	가. ~ 러. (현행과 같음)
머. “레토르트(retort)식품”은 <u>단층플라스틱필름</u> 이나 금 속박 또는 이를 여러 층으 로 접착하여 파우치와 기 타 모양으로 성형한 용기 에 제조·가공 또는 조리 한 식품을 충전하고 밀봉 하여 가열살균 또는 멸균 한 것을 말한다.	머. ----- 제조·가공 또는 위생처리 된 식품을 12개월을 초과 하여 실온에서 보존 및 유 통할 목적으로 단층 플라 스틱필름----- ----- ----- -----.
버. ~ 터. (생 략)	버. ~ 터. (현행과 같음)
II. 공통표시기준	II. 공통표시기준
1. 표시방법	1. 표시방법
가.~머. (생 략)	가.~머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버. 식품제조·가공업 영업자 가 냉동 가공식품(축산물 가공품 제외)을, 식육가 공업 영업자가 냉동 식육 가공품을, 유가공업 영업 자가 냉동 유가공품을, 알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알가공품을 해동하여 보

관 및 유통하려는 경우에
는 다음의 표시사항을 표
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
경우에는 스티커, 라벨(L
abel) 또는 꼬리표(Tag)
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
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
여야 한다.

<신 설>

1) 제조연월일, 해동연월일,
냉동식품으로서의 소비
기한(또는 품질유지기
한)이내로 설정한 해동
후 소비기한(또는 품질
유지기한)

<신 설>

2) 해동한 제조업체의 명칭
과 소재지(냉동제품의
제조업체와 동일한 경우
는 생략할 수 있다)

<신 설>

3) 해동 후 보관방법 및 주
의사항

<신 설>

4) “이 제품은 냉동식품을
해동한 제품이니 재 냉
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”라는 문구 표시

<신 설>

5) 축산물가공품의 경우에
는 주표시면에 “해동된
냉장(실온)제품”이라는

(1) ~ (3) (생 략)
(4) 식품제조·가공업 영업
자가 냉동식품인 빵류
및 떡류를 해동하여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, 해동연월일, 냉동식품으로서의 소비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소비기한, 해동한 제조업체의 명칭과 소재지(냉동제품의 제조업체와 동일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), 해동 후 보관방법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.
다만, 이 경우에는 스티커, 라벨(Label) 또는 꼬리표(Tag)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.

(5) 식품제조·가공업 영업
자가 냉동식품인 빵류
및 떡류를 해동하여 유통할 때에는 “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 냉동시키

(1) ~ (3) (현행과 같음)
<삭 제>

<삭 제>

지 마시길 바랍니다”
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(6) (생 략)

- 3) (생 략)
나. (생 략)
다.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
1) (생 략)
2) 표시사항
가) ~ 하) (생 략)
거) 기타표시사항
(1) (생 략)

(2) 식품제조·가공업 영업

자가 냉동식품인 초콜릿류를 해동하여 출고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, 해동연월일, 냉동식품으로서의 소비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후 소비기한, 해동한 제조업체의 명칭과 소재지(냉동제품의 제조업체와 동일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), 해동 후 보관방법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. 다

(4) (현행과 같음)

- 3) (현행과 같음)
나. (현행과 같음)
다. -----

1) (현행과 같음)
2) -----
가) ~ 하) (현행과 같음)
거) -----
(1)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3) (생 략)	3) (현행과 같음)
아. (생 략)	아. (현행과 같음)
자. 음료류	자. -----
1) (생 략)	1) (현행과 같음)
2) 표시사항	2) -----
가) ~ 하) (생 략)	가) ~ 하) (현행과 같음)
거) 기타표시사항	거) -----
(1) · (2) (생 략)	(1) · (2) (현행과 같음)
(3) 과일 · 채소류음료	(3) -----
(가) (생 략)	(가) (현행과 같음)
(나) 식품제조 · 가공업 영	<삭 제>
업자가 냉동식품인 과 · 채주스를 해동하 여 유통하려는 경우 에는 제조연월일, 해 동연월일, 냉동식품 으로서의 소비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소비기한, 해동한 제조업체의 명칭과 소재지(냉동제품의 제조업체와 동일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 다), 해동 후 보관방 법 및 주의사항을 표 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스티커,	

라벨(Label) 또는 꼬리표(Tag)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.

(다) 식품제조·가공업 영업자가 냉동식품인과·채주스를 해동하여 유통할 때에는 “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”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.

- (4) ~ (9) (생약)
3) (생약)
차. (생약)
카. 특수의료용도식품
1) (생약)
2) 표시사항
가) ~ 하) (생약)
거) 기타표시사항
(1) ~ (3) (생약)
(4) “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”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.
(5) ~ (8) (생약)

<삭 제>

- (4) ~ (9) (현행과 같음)
3) (현행과 같음)
차. (현행과 같음)
카. -----
1) (현행과 같음)
2) -----
가) ~ 하) (현행과 같음)
거) -----
(1) ~ (3) (현행과 같음)
(4) “의사,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 -----.
(5) ~ (8)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3) (생 략)

타. ~ 너. (생 략)

더.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

1) (생 략)

2) 표시사항

가) ~ 하) (생 략)

거) 기타표시사항

(1) ~ (12) (생 략)

<신 설>

(9)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중

원재료가 냉동제품인 것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제조·가공한 제품의 경우에는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사용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.

(예시) 원재료 ○ ○ ○은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사용하였습니다.
원재료 ○ ○ ○: 해동제품

3) (현행과 같음)

타. ~ 너. (현행과 같음)

더. -----

1) (현행과 같음)

2) -----

가) ~ 하) (현행과 같음)

거) -----

(1) ~ (12) (현행과 같음)

(13) 식육간편조리세트 중

원재료(식육 제외)가 냉동제품인 것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제조·가공한 제품의 경우에는 냉동제품을 해

여 유통하려는 경우에
는 제조년월일, 해동
연월일, 냉동식품으로
서의 소비기한 이내로
설정한 해동 후 소비
기한, 해동한 제조업
체의 명칭과 소재지
(냉동제품의 제조업체
와 동일한 경우는 생
략할 수 있다), 해동
후 보관방법 및 주의
사항을 표시하여야 하
며, 주표시면에는 “해
동된 냉장(실온)제품”
이라는 표시를 “냉
동”이라고 표시된 근
처에 추가로 표시하여
야 한다. 다만, 이 경
우에는 스티커, 라벨
(Label) 또는 꼬리표
(Tag)를 사용할 수 있
으나 떨어지지 아니하
게 부착하여야 한다.

(16) 축산물가공업 중 유가
공업 영업자가 치즈
류, 버터류를 해동하
여 유통할 때에는 “이

<삭 제>

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” 등의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.

3) (생 략)

버. 수산가공식품류

1) (생 략)

2) 표시사항

가) ~ 하) (생 략)

거) 기타표시사항

(1) ~ (4) (생 략)

(5) 식품제조·가공업 영업

자가 냉동식품인 것같
류, 기타 수산물가공품
(살균 또는 멸균하여
진공 포장된 제품에 한
함)을 해동하여 유통하
려는 경우에는 제조연
월일, 해동연월일, 냉동
식품으로서의 소비기한
또는 품질유지기한 이
내로 설정한 해동 후
소비기한 또는 품질유
지기한, 해동한 제조업
체의 명칭과 소재지(냉

3) (현행과 같음)

버. -----

1) (현행과 같음)

2) -----

가) ~ 하) (현행과 같음)

거) -----

(1) ~ (4)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동제품의 제조업체와
동일한 경우는 생략할
수 있다), 해동 후 보관
방법 및 주의사항을 표
시하여야 한다. 다만,
이 경우에는 스티커, 라
벨(Label) 또는 꼬리표
(Tag)를 사용할 수 있
으나 떨어지지 아니하
게 부착하여야 한다.

(6) 식품제조·가공업 영업
자가 냉동식품인 젓갈
류, 기타 수산물가공품
(살균 또는 멸균하여
진공 포장된 제품에 한
함)을 해동하여 유통할
때에는 “이 제품은 냉
동식품을 해동한 제품
이니 재 냉동시키지 마
시길 바랍니다” 등의
표시를 하여야 한다.

(7) ~ (9) (생 략)

3) (생 략)

서. · 어. (생 략)

저. 즉석식품류

1) (생 략)

<삭 제>

(5) ~ (7) (현행 (7)부터

(9)까지와 같음)

3) (현행과 같음)

서. · 어. (현행과 같음)

저. -----

1) (현행과 같음)

